

오보의 문제점과 외국의 심의제도

안광식

이화여대 신방과 교수 · 중재위원

I. 서론

신문과 방송은 사회의 공기로서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제는 일종의 「사회적 세력」으로서 세상에서 당당히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신문과 방송이 그와 같은 막중한 사회적 영향력을 유용하게 선용하면 위대한 사회적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큰 세력을 오용, 악용하면 역사의 방향을 얼마든지 오도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신문과 방송은 어떤 다른 사회적 기구들보다도 가일층의 「사회적 책임」이 요청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과 방송은 부지간에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진실을 왜곡, 은폐, 묵살하기도 하며, 허위보도 또는 오보를 할 때도 있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윤리적인 침해를 범할 때도 있으며, 공중 · 국가 · 인류의 이익에 위배되는 보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는 오보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보도의 심의와 평가를 위한 방법이나 제도적 장치로서 다른 나라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오보의 문제점

오보의 문제점에 관하여 언급하기 전에 먼저 언론의 기본역할과 기능 및 사명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언론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회적 환경을 감시하고, 문화전수의 역할을 수행하며, 수용자들에게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를 부여, 올바른 사회규범을 설정해 주면서 교육적 · 계도적 역할을 감당하고,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임무를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의 사명과 책임은 진실을 추구하고, 공중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나아가서 인류의 이익을 도모하고, 사회적 · 역사적 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또한 일반적으로 언론에서의 보도가 사건의 「실제적 사실」과 얼마나 정확하게 같을 수 있는가도 때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언론에서 보도된 사실이 취재원에서 제공된 사실과 때로는 차질이 있기도 하며 「취재원의 사실」은 또한 사건의 「실제적 사실」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이 취재원을 거쳐 기자와 편집자를 통해서 미디어에서 신문기사와 방송보도로 제공될 때는 2번 또는 3번씩이나 왜곡, 가미, 오염된 보도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신문과 방송은 마감시간이라는 압력과 싸우면서 서둘러서 제작되는 기적의 산물이기 때문에 매체의 속성상 때로는 오보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신문 · 방송 · 잡지에서 자주 오보를 하게 되면 독자나 시청자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어 언론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되게 마련이다. 그런데 오보의 책임은 언론인들과 함께 뉴스원칙에도 있다. 오보는 물론 대부분의 경우 기자의 부정확성, 해석의 오류, 과잉된 열성, 부주의, 성급한 판단, 고의적 날조 등에 의해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한편 뉴스원칙의 실수, 그릇된 정보제공, 의도적 조작 등에 의해서도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언론풍토에서는 아직 까지도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받기는 경우가 드물고, 비록 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매우

신문의 수치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오보를 자주하면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에서 나온 발상 때문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대부분의 신문에서는 한 주에 3번 내지 5번의 정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지와 같은 좋은 신문일수록 다른 신문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정정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 저널리즘 리뷰」라는 언론평론지의 조사에 의하면 모든 신문에서 정정보도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편집기자들이 오보를 더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문의 영향이 보다 더 강해지고 독자들의 신문에 대한 신뢰도가 더 커져서 더욱 정확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보도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미디어에서의 선정주의라고 할 수 있다. 선정주의는 수용자들의 감성에 호소하고 그들을 자극시키면서 오락성을 추구하는 기능이 강하며, 선정주의의 추구는 긴장완화 또는 불만해소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디어에서의 선정주의는 또한 수용자들에게 값싼 낭만성을 조성해 주고도 있으며, 흥미본위의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호기심과 화제거리를 조성해 주고 있다. 그래서 미디어의 센세이셔널리즘은 올바른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바람직한 사회규범을 설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흥미와 오락, 순간적 도피와 시간낭비, 정치에 대한 외면, 사회적문제 의식의 결여, 도덕과 윤리의 퇴폐, 본능적 자극, 공공성보다 상업성을 발휘하는데 주효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선정주의의 궁극적 목표는 영리추구 이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 미디어에서는 또한 피의자에 대한 판결이 나기도 전에 기사와 제목을 통하여 유죄판결과도 같은 「언론재판」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언론이 성급하게 흥미위주로 사건을 취급하여 보도하는 습성 때문에 생기는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사건과 관련된 보도를 함에 있어 표현의 과장과 저속성, 불필요한 사진의 게재, 그릇된 제목, 사람과 기관의 익명 표시에 있어 암시적 영자의 사용,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장본인의 주소 사용 등이 모든 것이 무의식중에 보도된다 하더라도 뉴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요즈음 언론이 「공공의 이익」보다 수용자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보다 더 염두에 두는 경향이 농후하고, 질적으로 좋은 신문·방송·잡지를 제작하려는 노력보다 흥미위주의 「오락성과 선정성」을 발휘하여 상업주의에 영합하려는 성향이 짙기 때문에 빈번히 나타나는 결과의 소산이다.

III. 외국의 심의 · 평가제도

외국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심의평가의 방법으로는 크게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살펴보기로 한다. 즉 첫째는 사내에서의 자체평가고, 둘째는 사외에서의 윤리 · 심의 · 평가기구에 의한 평가며, 셋째는 미디어 또는 평론지들에 의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1. 일본에서의 지면평가

일본에서의 보도의 가치와 평가의 기준은 무엇보다도 1946년 일본신문협회에서 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의거하고 있으며, 그밖에 취재 · 보도 · 판매 · 광고 등의 문제에 관하여 각 사에서 자주적인 규율을 정하고, 각 사와 신문협회의 두 수준에서 지면심사를 하고 있다.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의 자유, 보도 논평의 한계, 평론의 태도, 공정, 관용, 지도, 책임, 품격

등의 7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또한 기자의 임무에 관한 기준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지면심사는 각 사와 신문협회 두 군데서 시행되고 있는데 먼저 각 사에서는 신문윤리강령, 사시, 편집방침, 광고게재기준에 의거해서 지면내용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2. 미국에서의 평가기준

미국의 경우 보도의 평가기준은 무엇보다도 1923년 4월 미국신문편집인협회가 첫번째 연차회의에서 채택한 윤리강령(Code of Ethics: Canon of Journalism)에 의거하여 왔으며, 그리고 1975년 10월에 미국편집인협회사회에서 그 강령을 보완, 새로 채택한 「원칙 선언」(Statement of Principles)에 의거하고 있다. 그 선언은 책임, 자유, 독립성, 진실과 정확, 불편부당, 공정성 등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에서 보도의 윤리 및 평가기준은 또한 「시그마 델타 카이」라는 미국언론인협회(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 Sigma Delta Chi) 및 AP 편집국장협의회(Associated Press Managing Editors Association)의 윤리강령에 제시된 내용에 의거하고 있다. 그 내용들의 기본사항들은 정확, 공정, 형평, 진실, 품위 등 우리나라나 일본의 윤리강령들과 별로 다른 점이 없다. 그러므로 윤리강령이 있는 나라들의 경우는 우선은 보도의 평가기준을 기본적인 자율적 윤리규범에 두고 있다.

3. 옴부즈맨제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지만 미국의 신문사에는 자체평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 담당하는 직책의 「옴부즈맨」(Ombudsman)이란 제도가 있다. 옴부즈맨이란 용어는 18세기 초 스웨덴에서 공무원에 대한 민원조사관이란 뜻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국의 신문사에서 독자들의 불평, 불만, 항의,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고 지면에 나타난 오보와 잘못을 찾아내서 진상을 밝혀내는 임무수행의 평가인이다. 옴부즈맨을 처음 택한 곳은 1967년 6월에 루이빌 쿠리어 저널과 타임즈(Louisville Courier Journal and Times)지에서였다. 그 직책에 임명된 사람은 그 신문사에서 40여년간 재임했던 사회부장 존 허천로더(John Herchenroeder)였다. 그의 임무는 신문에 대한 불평을 청취하고, 그것을 해명하며, 질문에 대답하고, 취재와 보도의 과정까지 설명하면서 보도내용의 타당성을 밝히고, 오보 또는 윤리적 잘못이 인정되면 자사의 과오를 시인, 정정기사 또는 사과문까지 쓰는 일을 담당했다. 옴부즈맨의 임무의 과정은 다양하지만 사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으로는 개인간의 면담 및 대화, 개인메모 작성, 게시판에 통보, 경영층에 정규적 보고작성 등으로 되어 있다. 그는 신문의 잘못을 독자들에게 알리는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데, 옴부즈맨이 신문에 게재되는 정정기사란을 편집하는데 책임을 지도록 하고, 독자들의 전화불평에 대답하거나 그들과 직접 면담을 하기도 하고 또는 지역사회 대표들, 신문자문위원들과도 만나고 있다. 그리고 옴부즈맨은 주 1회 또는 2회, 또는 정기적으로 신문비판칼럼을 쓰고 있다. 1970년대 초기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옴부즈맨을 지낸 저명한 신문비평가 벤 배그디키안(Ben Bagdikian)은 미국신문편집인협회지에 실린 한 글에서 옴부즈맨의 역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옴부즈맨은 신문의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임무라는 것이다. 만약에 비평가와 기자 또는 편집자가 어떤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옴부즈맨은 그의 칼럼을 써야 하고, 기자나 편집자도 같은 날 그 칼럼 옆에 답변을 할 기회와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옴부즈맨은 편집국에서 근무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무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자나 편집자들의 권한과 책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1년 또는 2년 단위로만, 재임도 안되고 해임도 되지 않는 근무의 제한조건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옴부즈맨은 다른 신문사의 고참자들 또는 신문학과 교수들 중에서 선발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배그디키안은 제안하고 있다. 한편 옴부즈맨제를 택하고 있지 않는 신문사들도 불평을 청취하고 독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1973년 미국신문발행인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23%만이 독자를 위한 그와 같은 공식적인 제도를 갖고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기자들은 그들이 쓴 기사에 대한 정확, 공정, 타당성 여부에 관한 논평을 쓰도록 요청되기도 한다. 세인트 피터즈버그 타임즈(St. Petersburg Times)지와 이브닝 인디펜던트(Evening Independent)지는 불평을 취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별전화선 핫라인(Hot Line)제를 채택하고 있다. 독자들로 하여금 별도의 전화번호를 통하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토록하고 광고, 부정확한 절차, 그밖의 오보에 관하여 불만을 토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불평을 취급, 담당하는 기자가 「The People's Voice」라는 난에서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세인트 피터즈버그 타임즈지의 회장 넬슨 포인터(Nelson Poynter)는 「편집자와 독자는 상호 신뢰하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핫라인이 필요한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신문이 좀더 책임있는 정부와 사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가일층의 효율적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채택한다」는 것이다.

4. 영·미의 신문평의회

신문에 대한 평가의 제도적 장치로서 미국의 전국뉴스평의회는 1973년에 발족해서 약 11년 동안 활동해 오다가 지난 1984년 7월말에 업무를 중단한 바 있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신문에 대한 공중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을 때 신문과 그 밖의 매스미디어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보고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한가에 관하여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와 같은 가운데서 지방, 주,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신문평의회들의 실현을 위한 각종의 절차가 취해지기 시작했으며, 새로 탄생하는 평의회들은 최소한 영국신문평의회(British Press Council)의 모델을 따르면서 출범하기 시작했다. 세계의 20여개 국에 있는 각국의 신문평의회중의 하나인 영국신문평의회는 신문에 대한 심한 비판에 부분적으로나마 호응하기 위하여 1953년에 창설되었다. 많은 영국의 언론인들이 그 기구의 창설을 반대했으며 운영의 실책을 계속 비난했다. 그러나 1963년에 평의회들의 재편성에 따라 호의적인 의견이 증가하여 1960년대 말에는 영국의 편집자들 중 86%가량이 그 존재개념을 시인했다. 평의회는 1년에 적어도 5번의 회합을 가지며, 상임직원이 일일 업무를 취급, 수행한다. 평의회사무국장 노엘 폴(Noel Paul)은 평의회 현장의 7가지 목적 가운데 3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① 신문에 대한 불평을 조사하고, ② 높은 저널리즘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언을 하고 임무를 수행하며, ③ 입법부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것이다. 불평사항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데 신문에 대한 불평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잡지에 대한 것은 취급은 하지만 별로 없고, 방송에 대한 것은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영국과 언론의 구조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 규모의 평의회가 필요한가조차 의문이었다. 미국에서는 1,750 여개의 일간지와 7,500 여개의 주간지가 서로 다른 목적하에 미전역에 산재하고 있으며, 평의회가 편집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압력기구가 될 것을 우려하고, 그 압력기구는 언론인에 대한 자격면허증제도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으며, 대부분의 신문에서는 자체평가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단계에는 평의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평의회 설치의 제안자들은 사내에서의 비판보다는 사외에서의 공중의 압력이 보다 더 필요하고 바람직스럽고, 그것이 신문과 공중을 보다 더 접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주, 전국적인 단위의 평의회가 발족되기를 주장했다. 그리고 몇 가지 방안이 나왔으나 마지막으로 1971년에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헛친스위원회(Hutchins Commission)의 제한을 재심하기 위해서 발족된 한 집행기구의 추천에 따라, 독립적인 전국뉴스평의회가 뉴스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평을 접수·심의·평가·보고하고, 또한 언론자유에 관한 문제를 심의, 보고하는 기구로서 발족되도록 모색되었다. 그래서 20세기재단(Twentieth Century Fund)과 그 밖의 7개 재단의 재정적 지원하에 전국뉴스평의회(National News Council)가 1973년에 정식으로 창설된 것이다. 미국의 전국뉴스평의회는 공중의 대표 10명과 미디어의 회원 8명으로 구성되며, 미디어에 대한 불평과 미디어문제에 관한 정책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졌다. 그리고 영국의 평의회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평의회에 불평사항이 제기되는 경우, 같은 문제를 갖고 보도기관을 대상으로 법정에 제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 이와 같은 배려는 뉴스기관이 이종으로 곤경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이며, 한편으로는 뉴스평의회가 조사기관으로 행사,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5. 유럽의 신문평의회

신문평의회제도는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서구의 20여개 국에서 각양각색으로 이 제도를 택하고 있다. 지면관계상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3개국의 신문평의회 기능 조직에 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노르웨이 신문평의회

노르웨이 신문평의회는 노르웨이 신문협회(기자, 편집인, 발행인들을 위한 언론조직단체)에 의해서 1928년에 창설되었으며, 노르웨이 신문의 윤리적 직업적 수준을 보호, 향상시키기 위한 것을 그 취지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임무수행의 일환으로 신문평의회는 노르웨이 신문의 제작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불만호소사항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고, 그것에 관한 공표를 한다. 평의회는 또한 어떤 기구나 조직 또는 사람들이 신문과 신문인들의 정보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제기되는 불만호소사항을 판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사무국이 심의한 불만호소에 관한 내용은 먼저 불만의 대상이 된 자에게 제시된다. 그 안건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수용되면 피불만호소인은 평의회에 대하여 회신을 하도록 2주간의 기한을 갖는다. 회답내용이 불만호소인에게 제시되고 그는 또 2주 이내에 회신에 대한 논평을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불만호소인은 그의 최종적 회답을 하기에

2 주의 제한된 시일을 갖는다. 한편 평의회 임무의 대상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포함하지 않는다.

(2) 덴마크 신문평의회

① 덴마크 신문평의회는 의무는 신문실천요강(Good Press Practice)에 위배되는 사항에 관하여 재정 또는 그 밖의 성명 발표를 결정함에 있어 신문실천요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② 신문평의회는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한다. 평의회는 또한 사건이 매우 중요하거나 또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간주하면 평의회 자체의 결정에 의해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신문평의회는 제기된 불만호소사항을 평의회 권한 밖에 있는 것이라고 각하하든가 또는 재정을 위한 고려의 대상이 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한다. 명백하게 불합리한 불만호소사항은 평의회 위원장에 의해서 각하될 수 있다. 위원장은 또한 3 개월 이상이 경과한 불만호소에 관한 사항은 기각할 권한을 갖고 있다. ④ 평의회가 신청사건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결정을 했을 때 그 대상이 된 사람에게 불만호소사항을 문서로 전하고 응답의 논평을 하도록 요청한다. 사건에 대한 심의중 평의회는 보충적 자료와 정보를 얻고, 동시에 우호적 조정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⑤ 신문평의회는 결정을 보는 내용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를 도모해야 한다. 반대의견이 지상에 게재되지는 않는다. 표결시 동수면 평의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평의회 표결은 비밀에 부친다. 평의회 위원은 그가 소속되어있는 신문과 관련된 불만사항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3) 오스트리아 신문평의회

오스트리아 신문평의회는 언론을 위한 자율적 기관으로 1961 년에 오스트리아 신문발행인협회와 기자연맹에 의해서 창설되었다. 신문평의회는 20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두 창설기구에 의해서 각각 10 명의 위원이 임명된다. 위원들은 명예직으로 봉사한다. 그들은 어떤 규정을 따르지도 않으며, 『오직 그들의 양심과 기존의 법률』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한다. 평의회는 또한 견책하거나, 벌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직책을 해임시킬 그와 같은 규율상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평의회는 오직 도덕적 권위와 결정에 대한 자발적 수용의 인정에만 의존할 따름이다.

IV. 우리의 방향

마지막으로 우리의 경우 보도에 대한 평가의 측면에서 무엇이 바람직한 방향인가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먼저 우리 언론사에서 옴부즈맨과 같은 내부적 평가의 제도나, 또는 구미의 신문평의회와 같은 외부적 평가의 기구가 필요한가라는 것이다. 아마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평가를 위한 유형적인 제도의 장치가 없이 미디어가 사내에서 스스로 보도의 가치를 올바르게 추구하고 사회적 · 역사적 책임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의의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자율적 규제규범을 위한 것으로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 및 방송심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제도적 기구로는 신문윤리위원회와 방송위원회안에 심의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제도적 기구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으며, 언론인의 연수를 담당하고 신문·방송에 관하여 평가와 논평의 임무를 수행하는 언론연구원이 있다. 또한 미디어의 각 사에서는 보도와 관련된 사시와 지침, 스타일북과 보도요강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신문·방송사에 따라서는 심의실 또는 유사한 부서에서 제작에 대한 심의, 평가를 하고 있다. 이상의 상황으로 볼 때 제도적 장치나 기구가 부족해서 보도의 가치추구에 차질이 생기거나 또는 윤리적문제, 오보 내지 허위보도가 생기는 것이 아닐 것이다. 아마도 문제의 핵심은 언론의 기본철학, 사회구조와 제도, 언론의 체제와 관행, 언론인의 전문성 여하 때문에 생기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한편 타율적 심의와 평가보다는 자율적 심의와 평가가 보다 더 중요하고 긴요하며, 자율적규범과 심의의 압력이 너무 심해도 그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언론의 독주와 횡포, 무분별한 역기능적 반사회적 보도를 사회가 그대로 방치, 묵인할 수는 없으며, 또한 언론이 진정한 보도의 가치를 스스로 찾지 못하고, 최소한의 자율적 평가의 의무마저 포기한다면 사외에서의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따르게 된다. 그러나 사외에서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보다는 옴부즈맨제를 포함한 자체심의평가제도의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신문·방송의 전문지들을 통한 평론과 평가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그것이 수렴되어 보도의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제작전반에 걸친 개선과 발전의 방향이 모색되기를 바라고 싶다. 끝으로 심의와 평가의 개념의 범주는 언론의 윤리·도덕적 규범의 문제, 선정성에 의한 상업성, 부정확과 불공정, 그 밖의 저널리즘의 고질적 문제들뿐 아니라 언론자유 및 언론정책과 관련된 문제의 평가까지로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언젠가는 후일에 지금의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중재와 시정권고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임무의 범주를 넓혀서 유럽의 신문평의회와 같이 언론의 기본사명과 책임 및 자유, 그리고 언론정책의 문제까지도 폭넓게 평가하는 가칭 「언론평의회」 또는 「언론위원회」로 발족되는 방향이 모색되기를 바라고 싶다.

- 서울대 영문학과, 미국 콜롬비아대 신문대학원
- 코리아 헤럴드 외신부장 역임
- 저술: 신문과 정부와의 갈등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